

2023년 토목·조경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3. 1. 2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	[기타경비]	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 (노+경+일) x 율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			
		토목	조경	산업 설비 (토목)	토목	조경	산업 설비 (토목)		토목, 조경, 산업-설비(토목)	전문 공사		총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		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3.7	13.8	13.7	8.4	7.6	8.4	5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3.8	13.9	13.8	9.0	8.3	9.0								5억 미만	0.40	0.68	0.51	0.32	0.16	0.10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		
	13~36개월 (1095일)	13.8	13.9	13.8	9.0	8.3	9.0		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9	13.0	12.9	8.8	8.0	8.8	30억 - 50억 미만	5.0	12.0	0.16	0.18	0.16	0.10	0.16	0.10	5억 ~ 50억 미만	토목공사(토건)	0.40	0.68	중건설공사	3.43				
	7~12개월 (365일)	13.0	13.1	13.0	9.4	8.6	9.4											산업-설비공사	0.16	0.51	상하수도설비공사,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	0.51	0.32	철도-궤도신설공사	2.45	
	13~36개월 (1095일)	13.0	13.1	13.0	9.4	8.6	9.4											조경공사	0.18	0.32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	0.32	0.16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85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7	12.8	12.7	10.0	9.2	10.0	50억 - 100억 미만	5.5	12.0	5.0	4.5	10.0	0.16	0.10	0.16	0.10	5억 ~ 50억 미만	30억 미만	100억	100억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	
	7~12개월 (365일)	13.2	13.3	13.2	9.6	8.9	9.6												100억 - 300억 미만	300억	300억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5,499		
	13~36개월 (1095일)	13.2	13.3	13.2	9.6	8.9	9.6												300억 - 1000억 미만	1000억	1000억	중건설공사	2.35	5,400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2.9	13.0	12.9	10.2	9.5	10.2	300억 - 1000억 미만	5.0	10.0	4.5	9.0	10.0	0.10	0.10	0.10	0.10	50억 이상	300억	1000억	1000억	철도-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	
	7~12개월 (365일)	13.1	13.2	13.1	8.1	7.4	8.1												1000억	1000억	1000억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20	3,250		
	13~36개월 (1095일)	13.2	13.3	13.2	8.7	8.0	8.7												1000억	1000억	1000억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		□ 산업-설비(토목) 해당공종: 수처리시설(오폐수, 하수처리, 분뇨처리, 정수장) 등																								
[산재보험료]		[환경보전비]		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														
(노) x 3.7		(직접공사비) x 율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	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노동부 고시 제2021-95호(2021.12.29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		구분						공사규모(추정가액)				요율											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				50억 미만				0.081														
[고용보험료]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		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0.080														
(노) x 율		지하철				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0.075								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철도						300억 이상 중심-총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0.071														
[1등급] 1700억 이상	1.57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				300억 이상 중심-총량제(건축)				0.068														
[2등급] 1700억 미만 ~ 950억 이상	1.30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				터키-대안공사				0.084														
[3등급] 950억 미만 ~ 550억 이상	1.13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		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				*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														
[4등급] 550억 미만 ~ 400억 이상	1.06	댐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														
[5등급] 400억 미만 ~ 220억 이상	1.03	택지개발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액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														
[6등급] 220억 미만 ~ 140억 이상	1.02	주택(신축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														
[7등급] 14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	1.01	주택(신축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						
[7등급] 14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	1.01	주택(신축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						
[7등급] 14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	1.01	주택(신축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						
[7등급] 14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	1.01	주택(신축)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				*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				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																
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		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			수수료														
*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송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8-146호, 2018.12.18.)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, 운영-절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				70억 미만				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														
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비 산출에 관련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						70억 이상 - 120억 미만				[100만원+(직공비-75억원)x0.0102%]x공기(년)														
[건강보험료]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[연금보험료]																								
(직노) x 3.545	(건강보험료) x 12.81	(직노) x 4.5															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 모든 건설공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		120억 이상 - 250억 미만				[150만원+(직공비-130억원)x0.0077%]x공기(년)														
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		250억 이상 - 500억 미만				[240만원+(직공비-250억원)x0.0063%]x공기(년)								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						500억 이상				[400만원+(직공비-500억원)x0.0050%]x공기(년)														
(직노) x 2.3																				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																										
*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,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

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

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

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

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(도급자관급 제외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

* 건설업의 분류

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-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,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, 지하철도, 지하상가,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, 기타건설공사(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)

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,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

- [중건설공사] 방파제 신설공사, 안벽공사, 높이 20m 이상의 고체방(댐) 등 신설공사,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, 터널신설공사, 굴착식 지하철도-지하도 신설공사,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,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

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 과선교, 송전선로

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공사, 조경공사(전문포함), 택지조성(경지정리포함), 포장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

[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]

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, 2022. 6. 2.)